

제 496 호
1975.4.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계		
제 942 호	서울특별시	학생수권원 설치조례	3
제 943 호	서울특별시	성곽복원위원회조례	4
○ 규	칙		
제 1460 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접수제행정 처분규칙중 개정규칙	5
제 1461 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환지 지시추량 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7
○ 고	시		
제 45 호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19
제 46 호	도시계획시설 (광항및도로)	지적일부 변경승인	20
제 47 호	도시계획시설 (공동구)	결정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764

제 48 호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22
제 49 호	서울특별시 사료성분 등록고시.....	23

◎ 공 고

제 80 호	각인개각공고	24
제 81 호	영동제 2 지구 (추가) 토 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	25
제 5 호	(양서출장소공고) : 공인개각공고.....	26

◎ 사 령27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경성
197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42호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설치조례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교원 및 학생의 정신수련과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도서벽지 학생 및 해외동포 학생의 서울방문시의 수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산하에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 (위치) 수련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사직동 3번지의 23호에 두고, 야외수련장을 다음과 같이 둔다.

- 1. 대성리야외수련장 : 경기도가평군의서면 대성리 584번지
- 2. 천마산 유우스호스텔 : 경기도 양주군 아금면 호평리삼 1번지의 1호

제3조 (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원 또는 지

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원장 유고시에는 교육과장이 원장을 대리한다.

제4조 (정원) 원장의의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5조 (하부조직) 수련원에 사무과와 교학과를 둔다.

사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학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되 교육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 (경비부담) 수련원의 건립에 의한 수련자의 숙식은 무료로한다. 다만, 타기관과 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숙식비는 별도로정한 바에의하여 그 실비를 부담시킬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식 비 (1식당)	숙박비 (1박당)
국 민 학 생	100 원	100 원
중 고 생	150 원	150 원
교 원	200 원	200 원

각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성곽북원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43 호

서울특별시성곽북원위원회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서울성곽북원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사회 각층의 여론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하고 자 서울특별시 성곽북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곽의 원형 복원에 관한 일
2. 성곽주위, 조경 녹지, 도로시설,

기타 환경조성에 관한 일

3. 성곽북원과 도시계획과의 관련문제에 관한 일

4. 성곽북원에 관한 사회 각층의 여론반영

5. 기타사항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일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 1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사계의 권위있는 사학자, 언론인, 문화계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조경전문가, 건축 및 토목전문가 기타 사회 이론지도층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책)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공보실장,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7 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원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실과부원사업이 완성될때까지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순 인

1975. 4. 18

○ 서울특별시규칙제 1460 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법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즉결출두지시서를 교부받은 운전자"를 "법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받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와 즉결심판의 출두지시서를 교부받은자"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중 "법칙금 납부통고서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4 항 및 제 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발지 경찰서장은 법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받은 법칙자의 주소지가 관내일 때에는 5일간, 관외일 때에는 7일간 보관하되 법칙금 납부명증을 제시하여 면허증을 환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관기간 만료일일지체없이 동사실을 보관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 또는 타 시도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반별 백점수 및 행정처분 내용을 면허대

장(점사본)에 기재하고 보관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사람은 전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다른시도로 이첩할 사람은 단속지 경찰서장이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직송하여야 한다.

⑤ 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주소지 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출두하였을 때에는 법칙금 납부통고서 이면의 준 수사한중 출두일시를 연거하여 기입하고 수리와 동시 즉심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입 연기사유는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법칙금 납부통고서 이면에는 관인을 찍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중 "법칙금영수증서 또는"을 삭제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 (보관물반환) ① 행정처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범규위반 운전자가 벌과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
완료일 12:00 이후에 반환한다.

②법치자가 납기내 법치금을 납부하
고 납부필증을 제시한 때에는 경찰
본서에서 당해 면허증을 환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규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4. 18

○ 서울특별시규칙제 1461호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
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지시측
량대행에 관한조례 (이하 "조례"라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회구성) ①서울특별시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지시측량 대
행인자선정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한다)
는 위원장 1인파 위원 4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구획정리사무에 경험이 풍부
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임명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를 위촉 임명한다.

제 3 조 (심의회운영) ①환지지시측량 대
행인자 (이하 "대행인자"라한다) 의
지정 및 취소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는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대행인자의 지정은 조례제 3조의
규정에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적위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한다

③기타 운영에 관한 심의는 제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조 (대행인자 지정신청) 대행인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대행인자 지정신청서 (별지제 1
호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자본
인인 경우 호적 또는 주민등록
등본)
3. 대행인자 대표 및 측량사의 기
력서와 신원증명서

<p>4. 측량사의 자격증사본 및 경력 증명</p> <p>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지연인인 경우 재산증명)</p> <p>6. 대행업자 사무실시설 및 설비내용과 영입감찰증명</p> <p>7. 재정보증서 (조례제 5조)</p> <p>제 5조 (대행업자의수) 대행업자의 수 및 선정방법 등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p> <p>제 6조 (지정서교부) ①대행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과 환지지사 측량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계약체결 및 조례제 5조 제 2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였을 때는 별지제 2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p> <p>제 7조 (측량의신청 및 처리) ①대행업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별지제 3호 서식에 의한 환지 지시측량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 4호 서식에 의한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제 5호 서식에 의한 환지지사 측량필증 및 별지제 6</p>	<p>호서식에 의한 환지지사측량도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③대행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 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에 측량예정일시 및 환지지사 측량필증 교부일자 등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환지지사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교부한 공사 완료지역표시 1/5,000도면에 의거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측량사는 측량도면에 기명날인후 대행업자 명의로 환지지사측량필증을 발급한다.</p> <p>제 8조 (측량방법) ①측량은 도근점 또는 중심점을 기준으로하여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의 측량방법에 의할 수 있다.</p> <p>②대행업자는 측량실시전에 환지에정도(원도) 및 환지에정지 조서에 의하여 중요기재내용(연강, 거리, 면적 및 기타사항)을 확인한후 등사한다. 다만, 등사를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수로 접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수수로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환지에정도 및 기타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받은후 그지시에 따라 처리</p>
--	---

하여야 한다.

④확도된 추량필증 교부원안은 지구별 및 월별로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의 취소 및 기타사유로 동일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결함의 원안 및 기타 관계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징수 및 환불) ①대행업자는 조계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신청시 접수시에 징수할수 있다.

②추량신청후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 1. 추량업무의 사무준비 완료시(건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등사완료시를 말한다)수수료의 50%환불
- 2. 추량업무의 사무준비 이진일시수수료의 100%환불

제10조(업무보고) ①대행업자는 별지제 8호 서식에 의한 추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한 전월분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업무수행중 필요한 사항을 수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업무를 수시 감사시킬수 있다.

②대행업자는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지원) 대행업자는 대행업무 개시전에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1. 환지에정도(열람도) 비치
- 2. 대행업자 직인조각 및 시장에 등록
- 3. 대행업자 사무실토시판 설치(별지제 9호서식)
- 4. 대행업자 지정서 및 추량사의 자격증 제시
- 5. 수수료징수 및 환불표 제시

제13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대행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서울특별시 환지 지시추량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영업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자본금 : 재산평가액 원

불입자본액 원

종업원 : 추 량 명

사용인 명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 지시추량 대행업자로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인)

첨부 : 일건서류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 지정서

상호 또는 명칭 :

영업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유효기간 : 자 19 년 월 일
 지 19 년 월 일

귀하를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지시 측량대행자로
지정함.

19 . . .

서울특별시장

(별지 뒷면)

1. 이 지정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2. 이 지정서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지정서는 사무실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 3 호 서식						
환지지시 추량신청서					처리기한	3 일
		①주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19 . . . 생			
토 지 소 재			⑧	⑨	⑩	⑪
⑤ 구	⑥ 동	⑦지 번	구획번호	추량필수	사용 목적	추량일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6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지지시 추량을 신청하오니 추량후 도면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추량대행업자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1. 신청서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 합니다.				구	수	비
				준	수수료액	교
				1필~20필	필당2,000원	연속지
				21필~50필	1,000원	"
				50필초과	5,000원	"

별지 제 4호 서식

추방신청서처리부

접수 일자	지구명	동명	지번	BL	필수	신청안		수수료	용도	추방 예정일	추방 일자	추방사	신청인		건축인 가, 부	
						주소	성명						일자	수명		

별 4호

시

보

1975.4.18 34-13

1771)

별지 제 5호 서식

환지지시 측량필증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

()

19

수신 :

제목 : 환지지시 측량필증 교부

1. 74 자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구획정리 구획내
동 번지의 (채비지) 호의 환지지시 측량도면을 별첨과
같이 교부하며,

2. 환지지시의 재측량은 인력부족등으로 재시행키 어려우니 경계
발목을 철저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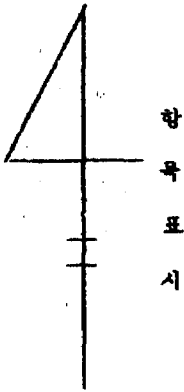
첨부 : 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

()

<별지 제 6 호서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구획내
동 인지 호 환지지시축방도



합
목
표
시

축
방
일
자
서
기
: :
?
년
월
일
·
축
척

1,200/1

축
방
식

1. 사용목적
2. 건축가능지역여부 판단
 - 가. 건축가능지역 ().
 - 나. 건축불가능지역 ().
3. 본 도면은 축방에 사용치 못함.

㉔

<별지제 7 호서식>

측 량 신 청 접 수 증

신청위치: 구 동 번지 호

(지구)

신청인: 구 동 번지 호

성 명:

필 수: 필

수수료: 원

용 도:

측량예정일시: 19 . . .

환지지시측량
필증교부일자: 19 . . .

위의 같이 측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7 . . .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측량대행자 대표

㉑

<별지제 8 호서식>

업 무 실 적 보 고 서

수신: 서울특별시청 귀하

참조: 기획정리 1·2 과장

발신: 서울특별시대행

기간: 자 19

축양자 대표

㉔

자 19

1. 내 역

지 구 별	구 분	건 수	수수료액	비 고
	1 - 20 필			
	21 - 50 필			
	50 필 초과			

2. 축양실적현황

별 첨 양 식

34-18

제496호

시 보

1975.4.18

축양실적현황

(월 분)

축양위치				신청인		접수	축양	축양사	필증교부	비고
지구명	동명	지번	BL	주소	성명	년월일	년월일			

<별지제9호서식>

업 소 표 시 판

서울특별시 모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
 지시축양 대행사무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전화: 00 - 0000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5 호

서울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198호(71.4.7)로
일부변경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거 도시계획
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각해당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
다.

- 첨부: 1. 도면생략
- 2. 지적승인 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1975.4.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지역	응구 동자동, 용산구 갈월동, 문배동, 한강로 1, 2, 3가, 원효로 1, 2, 3가 일부지역	1,293,350 ㎡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에 보관함.

<p>◎서울특별시고시제 46 호</p> <p>도시계획시설(광장및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p> <p>1. 건설부고시제 49 호 (75.4.3)로 변경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 4. 15.</p> <p>서울특별시 장</p>						
<p>가. 광장지적 일부변경 승인조서</p>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26	만리동광장	서대문구 만리동	19,572 ㎡	면적추가			
변 경	"	"	"	24,150 ㎡	(4,570 ㎡)			
<p>나. 도로지적 일부변경 승인조서</p>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대로	2	19	28m	1,600 m	만리동광장	공덕동광장	
변 경	"	"	"	"	1,475 m	"	"	
<p>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p>도면은 서울시청 및 서대문구청에 보관</p>								

◎서울특별시고시 제 47 호

도시계획시설(공동구)결정

1. 당시 여의도 관내 도시계획시설(공동구)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16.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초서

구분	명칭	규모	번호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계	공동구	3×2×2.5	1	3,879 mm	대3-98	광로 28 호	354mm이시공
				3,879 "			
신설 " " " 소계	공동구	3×2×2	2	1,061 "	대3-31교점	대1-30 교점	대1-27경유
				660 "	"	"	당28 경유
				380 "	대3-95교점	국회의사당앞	
				130 "	대1-27교점	중1-141	
				2,231 "			
합계				6,119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영등포구청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48 호 :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16.

서울특별시장

가. 주차장 시설조서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시내버스 주차장	성동구대치동 235-3 의 2 필지	895.5 평	서울여객
"	영등포구시흥동 262 의 4 및 5	약 727 "	육성운수
"	성북구서관동 124 의 9 및 18	736 "	상진운수
"	관악구봉천동 343-2	304.7 "	신촌교통
"	성북구중곡동 211-1 의 15 필지	685 "	화곡교통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 호

제 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사료성분 등록 고시

1975. 4. 14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에 대한
등록이 있었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사료성분량				유요 기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단 백질	조단 지방	조단 섬유	조단 회분		
4-101	전국연합 사료공업 주식회사	성동구 자양동 544-7	유 일운	배합 사료	산란 증기	21-35 주	14.5%	3.0%	7.0%	8.0%		
4-102	"	"	"	"	산란 초기	조산 20 주	15.0%	3.0%	7.0%	13.0%		
4-103	"	"	"	"	큰병아리 후기	17- 초산	12.0%	3.0%	7.5%	9.0%		
4-104	"	"	"	"	큰병아리 전기	13- 16 주	13.0%	3.0%	7.5%	9.0%		
4-105	"	"	"	"	중병아리	7-12 주	16.0%	3.0%	7.0%	9.0%		
4-106	"	"	"	"	어린병아리	0-6 주	19.0%	3.0%	6.0%	8.5%		
4-107	"	"	"	"	산란 종계	산란종계	16.0%	3.0%	7.0%	13.0%		
4-108	"	"	"	"	부리일러 후기 1	4 주이상	17.0%	3.0%	6.0%	8.0%		
4-109	"	"	"	"	부리일러 후기 2	출하 1 주 전 부리일러하기 전	16.0%	3.0%	4.0%	9.0%		
4-110	"	"	"	"	육계 종계	육계 종계	15.5%	3.0%	7.0%	13.0%		
4-111	"	"	"	"	젓매기 송아지	2-3 개월	19.0%	3.0%	7.0%	9.0%		
4-112	"	"	"	"	산란 말기	36 주이상	14.0%	3.0%	7.0%	13.0%		
4-113	"	"	"	"	젓매기 돼지	체중 11-20kg	15.0%	3.0%	6.2%	8.0%		
4-114	"	"	"	"	어린이 돼지	2-4 개 월	15.0%	3.0%	6.0%	8.0%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사료성분량				유 용 기 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 이상	최대량 % 이하	최소량 % 이상	최대량 % 이하		
4-115	전국배합 사료공업 주식회사	성동구 지양동 544-7	유일용	배합 사료	중퇴지전기	5 - 6 개월	14.0	3.0	8.0	10.0		
4-116	"	"	"	"	양돈용농축사료	양돈용	14.0	2.0	6.0	10.0		
4-117	"	"	"	"	젓소중상아지	4 - 6 개월	16.0	3.0	9.0	9.0		
4-118	"	"	"	"	어분기초	어분기초	50.0	2.0	2.5	9.0		
4-119	"	"	"	"	부리일 위전기	4 주까지	19.0	3.0	6.0	8.0		
4-120	"	"	"	"	젓소큰상아지	7-18 개월	13.0	3.0	10.0	11.0		
4-121	"	"	"	"	작유 1	비유량 20kg 이하	13.0	3.0	10.0	11.0		
4-122	"	"	"	"	미 임신돈	9개월 - 임신	12.0	3.0	10.0	10.0		
4-123	"	"	"	"	임신전기	임신 2개월까지	13.0	3.0	10.0	10.0		
4-124	"	"	"	"	육골분기초	육골분기초	40.0	5.0	3.0	33.0		
4-125	"	"	"	"	인삼칼슘기초	인삼칼슘기초	-	-	-	95.0		칼슘6% 이하인 39이하
4-126	"	"	"	"	양계용농축사료	양계용	16.0	2.0	4.0	12.0		
4-127	"	"	"	"	식물성박류기초	식물성박류 기초	35.0	3.0	8.0	7.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80 호

공인계각공고

영등포구 가리봉동과 시흥 제 2 동의
동장직인 및 지인이 마멸되어 계각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역제 9 조





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함.

1975.3. .

서울특별시장

계각공인 사용계사일

1975.3.10 00:00

개작공인 인명 :			
동 명	구 분	직 인	계 인
가 리 봉 동			
시 품 제 2 동			
<p>◎서울특별시공고 제 81 호</p> <p>영등재 2지구 (추가)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p> <p>1. 건설부 공고 제 9 호 (75.2.14) 로 시행인가된 서울특별시 영등 재 2지구 (추가)토지 구획정리사업 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p>		<p>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제 2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4. 1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인 가 내 용

가. 사 업 명 : 영동제2지구(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시행지구 및 면적 : 성동구 대치동 일부

85,369㎡ (25,824평)

다. 시 행 자 : 서울특별시장

라. 사 업 년 도 : 1975.4. - 1976.12.31

마. 시행인가년월일 : 1975. 2.14

바. 관 계 도 면 : 생 략

◎양서출장소공고제 5 호

묵 하였기 이를 공고함.

공 인 개 각 공 고

197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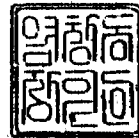
당 출장소 산하 영창동장의 직인
이 마멸되어 폐기하고 개각 사용토

양 서 출 장 소 장

- 1. 공인명 : 영창동장의 직인
- 2. 사용일시 : 1975.4.15 09:00
- 3. 공인인명 :

폐 기 인 영

개 각 인 영



사 령

◎ 1975.3.31

위생연구소 지방보건연구보 이 병국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4.7

심복구 지방행정사 이경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선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심복구 지방행정사 박유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전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외계과 지방행정사 신우단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전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사 강종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감봉1월)을 동일
자로 변경 전책에 처함.

도봉구 지방행정사 이희석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감봉1월)을 동일
자로 변경 전책에 처함.

◎ 1975.4.7

구와정리 1과 지방토목 김석우
기원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75.4.9

치수과 지방토목 김석기
기원
지방공무원법제 65조의 2
1항1호에 의거 그 지위
를 해제함.

◎ 1975.4.10

운수 2과 과장서기관 김원경
국가공무원법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윤 수 2 과 지방행정 사무관 김 계 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
에 처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청구원
(윤수2과파견) 주 사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수도관리사업소 지방기계 김 명 기
기원보시보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상 정 과 지방행정 고 흥 국
사무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 울지연습 75 " 중앙통계단
요원으로 파견 (75.4.10 -
75.7.15) 근무를 명함.

관 약 구 지방건축사 임 한 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
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감봉 3 월 처분을 동일자로
전책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건축 최 장 일
기사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전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암서출장소 지방건축 오 세 호
기사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감봉 1 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동대문구 지방건축 나 영 근
기사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전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관 약 구 지방건축 오 세 태
기사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 호)

감봉 6 월 처분을 동일자로 감봉

1 월에 처함.

관 약 구 지방건축 박 춘 상
기사원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제 966호)
 전체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급수과 지방토목 기사보 정진호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갑함.
 구의수원지사무소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기계 기사보 남상갑
 지방기계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갑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 1975.4.11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 이석중
 주 사무소 이석중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부 지방전기 이중호
 위생치리장 기사보 이중호
 지방전기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갑함.
 서부위생치리장근무를 명함.

◎ 1975.4.12
 기획관리관실 이사관 주용준
 (기획담당관) 주용준
 75.4.2-4.24 (13일간)까지
 공무원해의여행규정에 의하여
 (이란) 해외출장을 명함.

기획관리관실 서기관 김수철
 (기획담당관) 김수철
 75.4.2-4.24 (13일간)까지
 공무원해의여행규정에 의하여
 (이란) 해외출장을 명함.
 의약과 지방행정 임정석
 주 사무소 임정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황용학
 주 사무소 황용학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진홍
 주 사무소 서진홍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임수원
 주 사무소 임수원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여필우
 주 사무소 여필우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신상래
 주 사무소 신상래
 마포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구본길
 주 사무소 구본길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유수연
 주 사무소 유수연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김수환
 주 사무소 김수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강대선
 주 사무소 강대선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김수봉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이신렬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김백철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박성희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김달수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신형식
용산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이광영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이광욱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석진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이용일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정강현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조철소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최일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서서기보	배우서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유현영	영등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무소	심홍섭
마포구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지상준	마포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조성표
관악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이주연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무소	김용순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김영면	중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윤창기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무소	이상범	중구 지방행정 서서기보	김중복
영등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행정 서기보 송 남 수 영동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행정 주 오 인 환 마포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서기보 김 중 우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방행정 주 이 도 직 용산구 근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 주 김 용 찬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조 중 완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 네 문 구 지방행정 주 김 문 삼 중구 근무를 명함.	3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은병출장소 지방행정 서 임 영 석 자동차정비사업소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보 조 칠 수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서 양 석 구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경 리 과 지방행정 주 현 승 우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보 박 종 용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진 추 과 지방행정 주 조 인 혁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사 회 과 지방행정 주 장 유 식 총무과 근무를 명함.	은병출장소 행정주사 방 급 영 사회과 근무를 명함.
보건행정과 지방행정 주 박 형 순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14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사 회 과 지방행정 주 강 정 응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중 구 지방행정 주 김 상 규 새마을노임소주사업추진본부과정을명함.
어림이래공민 관리사무소 지방행정 주 이 승 우 사회과 근무를 명함.	동 네 문 구 지방행정 서 김 정 응 새마을노임소주사업추진본부과정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이 용 기
문화공보신평전근무를 명함.

최호출장소 지적기사 박 흥 모
중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적기사 김 주 복
최호출장소근무를 명함.

섬 동 구 지방농림기 성 현 영
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최호출장소 지방농림기 사 보 박 인 준
섬동구 근무를 명함.

방호담당관실 지방건축기 사 보 최 중 성
건축과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건축기 원 보 권 인 호
방호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운 동 장 지방기계원 황 규 철
도봉구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지방토목기 사 김 필 교
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토목기 사 보 감 판 근
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토목기 사 보 한 규 섭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토목기 사 보 김 영 세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역참사업소 지방토목기 사 보 김 광 조
성북구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토목기 사 보 이 창 식
역참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방토목기 사 보 김 경 봉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기계원 권 병 호
역참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 동 포 구 지방토목기 사 보 시 기 석
영등포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토목기 원 보 박 철 근
관악구 근무를 명함.

© 1975.4.14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 권원삼
운수 2 과 유기로
운수 3 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만용
차량(운송)동원요원으로 운수
1과파전(75.4.14-5.14)
근무를 명함.

수 원 과 지방토목기 사 보 구 돈 희
(설비개발계장) 과 하수과
하수과 하수시설계장에 보함.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최 재 범
(물리과장) 기과사보

수원과 설비개발계장에 보함.

하 수 과 지방토목기 사 보 서 의 석
(하수시설계장 직무대리) 기 사

토목시험소 물리과장직무대리를 명함.

◎ 1975.4.15

성 동 구 지방행정 황 보 윤
주 사 보
하수과 (천호제축조공사)

파견근무를 해제함.

중구근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행정 이 침
시 기

중구근무를 명함.

부 네 과 지방행정 정 연 숙
주 사 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기 진 과 지방가계 이 시 환
기 정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제 1항 1호, 4호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

토목시원소 지방화공 김 수 선
기사보시보

지방화공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토목시원소 근무를 명함.

◎ 1975.4.16

동대문구 지방건축 이 동 주
기 사
양서출장소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도로서원과장 토목기정 이 민 창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4.17

영동포구 지방건축 이 원 훈
사
건축과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건축 이 중 환
(건축과장) 기 사

은평출장소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은평출장소 지방건축 이 원 준
(건축과장) 기 사

영동포구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지 영 배
기 원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호에 의거

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안 상 명
기 원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호에 의거

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 부 구 지방토목 전 창 일
기 원 보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2호에 의거

하여 전직에 처함.

중구보건소 지방행정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박 명 환

시 민 과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2.9(발령제 994 호)
징계처분(전책)을 동일자로
취소함.

박 성 훈

성 북 구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2.19(발령제 1011 호)
징계처분(감봉 3 월)을 동
일자로 변경 감봉 1 월에
처함.

박 영 기

수 원 과 지방토목 과 진 인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기 전 과 지방기체 기 사 보 김 상 욱
부직을 명함.
2 호봉을 급함.
기전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철도
원(9등급) 홍 성 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2.10(발령
제 995 호) 징계처분(파
면)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6 월에 처함.

서울특별시 장